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엄태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010

발의연월일: 2025. 3. 17.

발 의 자: 엄태영·김은혜·김정재

윤한홍ㆍ이만희ㆍ박정하

강명구 • 고동진 • 김태호

김상훈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가입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 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 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가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청약종합저축(이하 "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"이라함)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.

그러나 무주택 청년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하여 그 일몰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8 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87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28년 12월 31일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87조(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	제87조(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		
대한 소득공제 등) ①・② (생	대한 소득공제 등) ①・② (현		
략)	행과 같음)		
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	3		
갖춘 주택청약종합저축(이하			
이 조에서 "청년우대형주택청			
약종합저축"이라 한다)에 <u>2025</u>	<u>2028</u>		
<u>년 12월 31일</u> 까지 가입하는 경	<u>년 12월 31일</u>		
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			
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			
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			
아니한다. 이 경우 비과세를 적			
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			
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			
합하여 연 600만원을 한도로			
한다.	<b>.</b>		
1. ·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		
④ ~ ① (생 략)	④ ~ ① (현행과 같음)		